“싱가포르 협약(조정 조약)의 이행”에 대한 토론문

강은현[[1]](#footnote-1)

조정 절차를 통해 성립된 국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싱가포르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합니다)은 2018년 유엔 본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2년 모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은 2019. 8. 7. 협약에 서명한 이후 국내법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에 비해, 발표문에서 일본은 2023. 10. 1. 협약에 가입하였고, 국내실시법을 제정하여 국제상사중재·조정의 조류를 따라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과 일본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발표자가 잘 설명해주신 관계로 이하에서는 발표문에 대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3면 이하 ‘(3)집행력 부여의 영향’ 단락에서 사적 계약인 조정에 의한 화해 합의(이하 ‘조정합의’라고 합니다)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근거에 대해 절차의 유연성과 due process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당사자의 주체적 지위와 합의의 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설명하면서 B2B 분쟁이라면 조정인의 관여의 방법을 개별적인 합의로 결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정 자체가 갖는 유연성과 효율성 등의 특성 때문에 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조정 절차의 틀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사견입니다. B2B 분쟁을 예로 드셨는데, 개별적인 합의로 조정인 관여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조정에 5면에서 언급하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7면 이하에서 발표자는 조정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집행결정절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결과 비교할 때 조정합의에 더 광범위한 집행력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행력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만 맡겨둘 경우 공서에 반하거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결정절차에서 일부 승인 등을 통해 집행력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인지, 집행단계에서 집행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혹은 현실적인 제도적 해결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요약된 발표문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주제와 관련한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의 통찰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footnote-ref-1)